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전문직 행위 규약

호력발생일: 2011년 11월 1일부터 유효함

업데이트: 2015년 9월

대체 규약: 2004년 12월 1일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윤리규약을 대체함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IBLCE)은 수유 및 모유수유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적격(適格)을 결정하는 세계적 공공사업 기관이다.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공공인의 건강 및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국제수유상담가시험을 통하여 수유 및 모유수유 관리에 관한 지식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평가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시험에 응시한 자들 중 합격자만이 국제인증수유상담가(IBCLC)가 된다.

국제인증수유상담가로서 모성과 아기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일면은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 및 이와 관련된 국제보건기구의 기타 결의문들의 원칙과 목표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서론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다수의 국제 문서에 표명되어 있는 인권의 대원칙, 즉 모든 인간은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지지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여성과 영아에게 모유수유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 국제인증수유상담가들에게 아래의 제 선언문에 약속된 바 윤리적 행위의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을 종용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의 협약](#)
- [여성을 상대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의 협약](#)(제 12 조)
- 전문의학회 위원회의 [제반 회사들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국제인증수유상담가 및 그들의 고객인 대중을 위한 최선책으로써,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전문직 행위규약을 세워 전문직 업무를 올바르게 지도하고자 한다.

전문직 행위 규약은:

- 최저 응납 행위 수준을 국제인증수유상담가와 대중에게 알린다;
-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유자 모두에게 바라는 공약을 예시한다;
- 국제인증수유상담가에게 필수 임무 실행의 뼈대를 제공한다;
- 불법 행위 혐의 건에 관해서 판결 근거의 역할을 한다;

정의 및 해석

1. 이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전문직 행위 규약 안에서, 이후 이 문서는 “규약”이라 칭한다.
2.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징계 절차를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3. 이 규약 안에서, “상당(相當)한 주의(主意)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배려함)”란 국제인증수유상담가에게 부과되는 의무로서 타인의 손상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실행할 때 합리적인 업무 (관리 및 진료) 표준을 고수한다는 것을 말한다.
4. “지적 재산” (원칙 2.5)이란, 저작권(원고, 사진, 슬라이드 및 삽화에 적용함), 상표, 서비스 및 인증 마크, 그리고 특허권을 뜻한다.
5. “모든 정보의 누출을 삼가다” (원칙 3.1)라는 문구의 예외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범위에 한한다:
 - (a)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 혹은 본 ‘규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 (b) 상담의뢰인이 자신과 아기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행동할 능력이 없어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합한 개인이나 단체와의 합의 하에, 상담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 (c) 국제인증수유상담가나 상담의뢰인을 위한 권리나 변호를 확립하거나, 혹은 상담의뢰인이 연루된 행위를 근거로 하여 국제인증수유상담가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 고발이나 민사 소송에 대한 변호를 확립하기 위해서;
 - (d) 국제인증수유상담가가 상담의뢰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소송 절차에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

6. “부당한 과실”은 합법적이지만 부적절하게 수행된 행동을 말하며, “부정 행위”는 불법적인 행동을 일컫는다.

전문직 행위 규약 원칙

본 “규약”에는 8 개의 원칙이 있으며 이 원칙에 따라 모든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반드시:

1. 모유수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상당한 주의로(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배려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3. 상담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의료진의 다른 구성원에게 정확하고 완벽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독자적인 판단력을 발휘하며 이해의 상충을 피해야 한다.
6. 본인의 청렴결백을 유지해야 한다.
7. 국제인증수유상담가에게 기대되는 전문직 표준을 지켜야 한다
8.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본 규약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함으로써 상담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책임진다.

원칙 1: 모유수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 1.1 어머니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그들의 수유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문직 공약을 성취해야 한다.
- 1.2 상담의뢰인의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적절하면서도 증거에 입각한 업무(관리 및 진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1.3 상담의뢰인이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1.4 상업적 물품에 관해서는 정확하고 완벽하면서도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원칙 7.1 참조)
- 1.5 사적인 편견 없이 정보를 발표한다.

원칙 2: 상당한 주의로(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배려하면서) 행동한다.

모든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 2.1 지정된 업무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 2.2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업무(관리 및 진료)를 위해 의료진의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해야 한다.
- 2.3 본인의 업무 적격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 2.4 수유상담가의 활동을 규정하는 법을 포함한 모든 적용대상의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5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야 한다.

원칙 3: 상담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한다.

모든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 3.1 직업상 업무 중에 얻은 모든 정보의 누출을 삼가야 한다. 누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상담의뢰인의 의료진 중 다른 구성원에게 전할 때, 또는 상담의뢰인이 특정된 사람이나 기관에게 정보 누출을 해도 된다고 명백히 허락했을 때이며, 본 “규약”의 ‘정의 및 해석’ 문항에 열거된 예외사례에만 한한다.
- 3.2 자신과 아기를 대신하여 어머니가 사전에 동의하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어떤 목적으로라도 어머니나 아기의 사진이나 테이프 (녹화 또는 녹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원칙 4: 의료진의 다른 구성원에게 정확하고 완벽하게 보고한다.

모든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 4.1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의뢰인의 의료진 중 다른 구성원과 임상 정보를 공유해도 좋다는 상담의뢰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4.2 원칙 3 에 입각하여, 상담의뢰인이나 동료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보일 경우, 적절한 사람이나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원칙 5: 독자적인 판단력을 발휘하며 이해의 상충을 피한다.

모든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 5.1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또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에, 어떤 재정적인 이해 관계가 실질적으로 있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보일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5.2 상업적인 배려가 전문직 판단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

- 5.3.1 만약 국제인증수유상담가가 상담의뢰인에게 해가 될만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소유하고 있다면 국제인증수유상담가로서의 전문직 업무를 자진하여 중단하여야 한다.

원칙 6: 본인의 청렴결백을 유지한다.

모든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 6.1 의료종사자로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 6.2 만일 국제인증수유상담가가 국제인증수유상담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남용을 하고 있다면 자진하여 전문직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 6.3 의뢰인의 장애 여부, 젠더, 성 지향성, 성별, 민족, 인종, 국적, 정치 성향, 결혼 상태, 지리적 위치,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에 상관없이 각각의 지정학적 위치나 환경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원칙 7: 국제인증수유상담가에게 기대되는 전문직 표준을 지켜야 한다.

모든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 7.1 본 “규약”이 정의한 테두리 안에서 업무 해야 한다.
- 7.2 자신이 제공한 수유상담 서비스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만을 대중이나 동료에게 제공해야 한다.
- 7.3 수유상담 서비스를 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인증수유상담가가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 7.4 자격증이 현재 유효할 때에만 그리고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이 그 용도를 정식으로 허가하는 방법으로만, “IBCLC”와 “RLC”라는 약칭을 사용하거나 “International Board Certified Lactation Consultant”와 “Registered Lactation Consultant”라는 칭호를 사용해야 한다.

원칙 8: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징계 절차에 따른다

모든 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 8.1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징계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한다.
- 8.2 아래의 경우가 본 ‘규범’에 위반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여야 한다.
- 8.2.1 국제인증수유상담가가, 수유 상담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직하거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핵심적인 문제로, 준거법 (準據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 8.2.2 국제인증수유상담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정부 수준의 징계를 받았으며, 그리고 징계의 이유들 중 적어도 하나는 본 '규약'의 원칙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8.2.3 관할법원, 면허증 발급원, 증명서 발급원 또는 정부관청이 국제인증수유상담가가 수유상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과실이나 부정 행위를 범했다고 결정한 경우.